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 이 행 협 약 서(안)

2022년 4월 15일



경상남도  
함양군

KT

주식회사 케이티  
산청지점

## -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

# 이 행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3(가공선로의 지중이설) 및 가공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함양군과 주식회사 케이티가 기존 가공 배전 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 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함양군(대표자 군수 서춘수)과 주식회사 케이티(대표자 사장 구현모, 대리인 산청지점장 임규동)이며, 이하 함양군을 “갑”, 주식회사 케이티를 “을”이라 칭한다.

**제3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에서 정하는 지중화 사업구간 및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중화 사업구간은 **보건소에서 연밭머리까지**로 하며 동 구간의 KT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인접한 지선도로)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 문화재, 교통통제 등에 따른 여건변동,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구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변경된 사업구역의 도면포함)로 사업구간을 축소할 수 있다.
2. 사업내용은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지하케이블설치, 통신주 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며, 기존에 설치된 지중공급설비의 이설은 제외한다.

## 제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

**제4조 (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범위)** ①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 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의 범위는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와 도로점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인·허가, 권리설정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제5조 (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 ① “갑”은 제4조에 따라 설계한 총 지중화 공사비의 100%를 분담한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갑”이 전액 부담한다.

1. 재질변경(도로포장 재질의 변경 등)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복구범위 초과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비 증가분은 전액 “갑”이 부담하며,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등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2. “갑”的 요청으로 “을”이 시행하는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중 통신기기 설치 공간 확보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① “갑”은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② “갑”과 “을”的 상호 협의 하에 분담금을 분납할 수 있다.

**제7조 (공사비의 정산)** “을”은 공사가 준공되면 “갑”과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확정하고, “갑”과 “을”은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지급)한다. 다만, 이설부지가 국공유지 또는 제3자의 소유로서 이설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각 1/2 분담한다.

### 제3장 지중배전기기 설치 장소 제공

제8조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제공) “갑”은 지중통신기기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갑”은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필요한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2. 지상기기 설치장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된 장소에 지하매설물 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변경된 설치장소로 결정한다.
3. 도로 및 보도 등 공공용지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도로굴착허가서 및 기기점용허가서(영구점용) 등을 “을”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다.

제9조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제외 장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기타 일반인 및 ~~통신설비~~(지중통신기기 포함) 안전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2.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3. 침수우려, 설치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 제4장 공사 시행

제10조 (공사의 구분) 본 공사는 “KT선로 지중화공사”와 “도로복구공사”로 구분하며 “KT선로 지중화공사”는 “을”이 “도로복구공사”는 “갑”이 시행한다.

**제11조 (공사의 착수시기 및 준공)** ① 본 공사는 “갑”이 “을”에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합한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가 입금되면 착수한다.

② 구간별, 공정별 준공은 “갑”과 “을”이 현장 입회하여 진행하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다.

③ 최종 준공검사 이후 “을”은 “갑”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준공도서(설계도서, 사진 포함) 파일
2.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2조 (민원발생 처리)** “갑”과 “을”은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여 공동 대처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약)**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기기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 “갑”이 지중화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갑”的 요청에 따른 지중화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중화사업이 9개월 이상 연기되거나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4조 (협약의 해약시 공사비 정산)** 제13조 등 “갑”的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을”은 그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갑”은 기 발생한 사업비와 협약 해약으로 인해 “을”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등으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업구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시행한다.

## 제5장 사후관리 및 기타

**제15조 (지상기기 이설 부담)** ① 제8조에 따라 “갑”이 제공한 지중배전기기 설치 장소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면,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

② 지중배전기기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민 통행불편,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갑”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갑”이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체(새로운 이설장소 권원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를 부담하며 새로운 이설장소도 “갑”이 제공한다.

**제16조 (점용료 감액)** “갑”은 본 공사로 인해 설치된 관로, 맨홀, 지상기기 등 배전설비에 대하여 운영기간동안 점용료를 1/2 감면하고, 감액된 점용료는 30년분 점용료를 현가환산하여 제4조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며, 제5조의 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17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부 칙 -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면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15일

“갑” 함 양 군 수

서 춘 수 (인)

“을” 주식회사 케이티  
대리인 산청지점장

구 현 모  
임 규 동 (인)